

제 343호

1973. 1. 17.

출판인 : 서울특별시청 남 편
발행처 : 공보실 남 편 2호
전화 : 75-9834
주소 : 서울특별시 남 편 2호
전화 : 75-6444 6000

시 보

국 가

○ 국 시

- 제 1285 호 서울특별시출판권한 사업소장명령규칙 3
- 제 1286 호 서울특별시하천건설본부제책명령규칙 3

○ 교 시

- 제 14 호 도시계획소묘명령 (폐지) 6
- 제 15 호 하천정수 및 공작물설치위탁 7
- 제 16 호 서울특별시지방공화회지침 8

○ 공 고

- 제 9 호 도시계획위원회제정규칙 및 업무시행
시행령 8
- 제 10 호 일관적추진계획작성 지침 위가 명령명령 10
- 제 11 호 지방공공기업법 제 1 조의 위대시행명령 11

○ 사 령 12

1. 시 공무원용 만포시 철폐야 한다.
2. 시는 농촌지도소의 목적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조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 대 식
1973년 1월 26일

㉞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5 호

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
조직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기관리사업소조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 운영제와 경비제 ○
을 ○ 운영제, 경비제와 감사제 ○ 보
하고 ○ 경비제감 ○ 을 ○ 경비제감과
감사제감 ○ 으로 하며 제 2 항 제 3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 사 제

- 가. 중기의 신상품검사
 - 나. 제품검사, 제품검사연기
 - 다.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 라. 기타 중기검사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조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 대 식
1973년 1월 26일

㉟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6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조직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조직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사무계, 기계계, 전기계, 운영계와 조난계를 두고 계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지면문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무 제

- 가. 문서, 관인 및 기밀
- 나. 인사, 복무, 급여, 휴정 및 교육
- 다. 통공물품의 구매및수 수급보관관리
- 라. 차량 및 비품관리
- 마. 회의의식
- 바. 타과제 수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 회 제

- 가. 지하철건설의 종합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조정
- 나. 인도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시

<p>3.4 제 342 호</p> <p>1. 설계지</p> <p>가. 예산 및 기제 (부내)</p> <p>나. 자금계획 및 수급조달</p> <p>마. 파관에 관한 사항</p> <p>2. 경리계</p> <p>가. 출납의 총괄 및 정산</p> <p>나. 회계심사 및 물품영수와 봉사</p> <p>경사입회</p> <p>다.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p> <p>라. 전입용지 기리의 매입처분 및 보상</p> <p>마. 전입용지 전입의 관리소장 및 증기</p> <p>바. 고령자산회계</p> <p>사. 금고에 관한 사항</p> <p>3. 운영계획</p> <p>가. 수급계획 및 운수수입 적정에 관한 사항</p> <p>나. 이윤율 및 실적보</p> <p>다. 운의 종류, 운수장 종류제정</p> <p>라. 운수요금 및 영업태도에 관한 사항</p> <p>마. 지하철 부대 사업운양해 관한 사항</p> <p>바. 영업선정인 관한 사항</p> <p>사. 운수경영입회 가 신청에 관한 사항</p> <p>아. 영업실비 및 용품에 관한 제</p>	<p>4. 회계 운영</p> <p>가. 영업사고조사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p> <p>나. 승차원 위탁장대</p> <p>다. 유실물보관 및 처리</p> <p>라. 영업실비 용품의 수급보관관리</p> <p>5. 조달계</p> <p>가. 공사용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p> <p>나. 봉사용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p> <p>다. 계약에 관한 사항</p> <p>마. 수입 외자계획 구매 조달 및 사후처리</p> <p>바. 운수용 물품관리 규정 및 표준수거처 지정과 운수에 관한 사항</p> <p>사. 운수용 물품의 수요 분배 관리 기준 및 운, 망실적 처리</p> <p>사. 입회출회 참가수가증권 출납</p> <p>다.</p> <p>제 6 조 :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6 조 (제작조사과) ①제작조사과에 조사과, 설계과, 건축과와 보선과를 두고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과로 기타 과장은 지방조사기과로 보한다.</p> <p>②제작조사과의 제정분장사무는 다음 과로 하 같다.</p>
---	--

1. 조 사 제
 가, 계획,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나, 건설현황 및 기술의 제정
 다, 노후 철거장 및 폐묘의 계획
 라, 분묘 공작장과 특수시설의 지
 배추정
 바, 분묘 노후 주택에 상하의 다
 니하는 사항

2. 설 계 제
 가, 보육시설의 종합조정
 나, 보육 시설기준 시방 및 용적
 의 제정
 다, 보육시설의 표준화
 라, 보육공사의 감부
 바, 보육용차 정비
 사, 보육시설용 재료의 유적제정
 아, 계획된 구역들의 설치용역의
 감부
 자, 계획된 구역들의 설계
 차, 계획된 구역의 시방 특수시
 설의 설계
 카, 공업의 개발

3. 관 력 제
 가, 계획된 구역의 내부 및 외부

건축물의 계획, 설치공사 말후
 시공감독
 나, 의상, 급수, 영안방기타 설치
 의 시설에 관한 지적, 분제,
 시공감독

4. 보 선 제
 가, 도로의 건설계획 및 구조에
 관한 권한 사항
 나, 도로의 제시방 및 설계재료
 의 제작감독, 현장 시공감독
 다, 국도 보수 계획의 차관 신청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공작전기차) ①공작전기차에
 전류제, 전력제, 신호제, 통신제와
 차량기계제와 무교 전류제장, 전력
 제장와 신호제장은 지상전기차로,
 통신제장은 지방통신기차 또는 지
 상전기차로, 차량기계제장은 차
 량기차로 포함다.
 ②공작전기차의 제별분장사수는 다
 음 2호와 같다.
 1. 전 류 제
 가, 차내 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나, 공사유권업무
 다, 전기관계 해의 용리에 관한
 사항
 라, 변전소시설의 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가. 국내 타계 주택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전 배 계

가. 수전, 급전 및 조명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나. 전차 선로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다. 건설공사의 전기부재 대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소관 전기시설 공사의 발주

3. 설 조 계

가. 지상 및 차상선로 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나. 소관선로시설 공사의 발주

4. 통신 계

가. 유선, 무선통신시설의 계획 및 시공감독

나. 소관통신시설 공사의 발주

다. 건설공사의 통신관계 대외처리에 관한 사항

5. 차량기지계

가. 차량설치계 관련 계획 및 설계

나. 동력차량설치의 기관부 설계

다. 동력차량 설비의 계획 및 기관설립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14 호

도시계획소모면경 (제지)

1. 당기 관내 도시계획소모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면경 (제지) 한다.

2.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실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보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1. 24.

서울특별시장

구분	종류	유식번호	유식면적	장기	집	종	면적	비고
기정	소로	2	8	354	집동	5-6	집동 1-2	
변경	·	2	8	354	·	·	·	배지

비고: 2번소로 (노선은 시청포시계차와 및 시민봉사실과 관할구상 시정봉사실에 노선)

② 서울특별시 교시계 15호

하천취수장, 농작물심치지가 하천취수 및 농작물 심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하천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73.1.24

서울특별시 장

1. 허가연월일: 1973. 1. 24.

2. 허가면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봉동 1차 10-90의 2

3. 농경 및 수답: 농작물심치 1개소 (면적 90㎡)

채반음계 설치 2개소

(면적 340㎡)

물양미 설치 1개소

배수분설치 2개소

4. 전용면적: 농작물심치면적

12,562㎡

5. 목적: 군 방파선 보호 및 토사배출

6. 수의자가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송모구 신문로 1가 170

유영재 단 어계동부

서울지사 지사장

이 재 윤

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8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지명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동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목록

지정번호	종 류	한 화 재 명	소 재 지	지정년월일
제 16 호	시	선 농 담	동대문구용두동 138	73. 1. 17
제 17 호	시	감실의 풍나무	영등포구방원동	"
제 18 호	"	화암동 느티나무	성동구 화암동	"
제 19 호	시	서명고 부근담	용산구서명고동 176	"
제 20 호	"	평창동보편산신좌	서대문구내삼동	"
제 21 호	"	인왕산선사위	서대문구인왕산동	"

1973. 1. 26

서울특별시 장

공 고

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9 호

도시계획법 제 12 호 일부개정 및
 중앙도시시장 시설 규정

1. 서울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중앙도시시장 시설이 전입
 부 고시 제 537 호 (72. 12. 23) 로

경정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
 제 6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한다.

2. 관계도시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동대문구청에 비치하
 여 비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1973. 1. 24

서울특별시 장

가. 용포지역 변경결정 표시			
구분	면적 (㎡)	면적 (㎡)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325,581,032	(감) 23,800	325,557,232
상업지	17,110,204	(증) 23,800	17,134,004
공업지	47,059,500		47,059,500
녹지	331,125,244		331,125,244
계	720,876,000		720,876,000

나. 용포도매시장 결정표시

구분	면적 (㎡)
전체	16,500

다. 변경 도면 표시와 같은 (도면상)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5 권할구형 시인부사설에 보편.

2. 건설부고시 (서울) 제 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인용변경및
용포도매시장지정 지체승인

1. 용포도매시장 지정 결정에 따
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제 13 호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 도시계획과 및 이에 관계 일체에
보이고 있습니다.

1973. 1. 24.

건설부장관

부 록 5. 토목시공 실적 (표시)				
구분	연도	지 수 (백)	지 목	비 고
상대완구용구용	19-11	984	대	
"	19-14	728	"	
"	19-15	475.70	"	
"	19-16	522.70	"	
"	19-17	588.70	"	
"	19-18	467.70	"	
"	19-19	57.30	"	
"	19-20	299.30	"	
"	19-21	301.30	"	
"	19-22	288.10	"	
"	19-23	287.70	"	
계		5,000.80		

토목 노역표시와 감률 (모면생략)
 노면은 서울시청 및 지하철국에 보관

<p>○ 서울특별시공고제 10 호</p> <p>인근의주대사신경사 임시행거가인도변경</p> <p>1. 서울특별시 도시 제 19 호 (기, 2. 25) 로 허가된 인근의주대사신경사 조성사업의 시행차를 도시제외방</p>	<p>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이유 하있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3. 1. 2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청</p>
---	--

1. 사업명칭: 서울특별시영용포구봉선동산 103-1 호지 3 필지
2. 사업의종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명칭: 학회도서관주택단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소: 국회의도서관사서각실 김 송 교
명칭: 국회의서관 주택조합
대표장 박 보 성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자: 71. 9. 2.
준공일자: 73. 6. 30.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행위에 관한 제반 인가
조건 및 지적사항의 의무이행을
승인한다.

① 서울특별시공고제 11 호
지하고속철도제 1호선부대시설인경
. 당시 관내 지하고속철도 제 1 호
선 부대시설이 건설부고시제 53호
(72. 12. 23)로 변경실질 요건
태임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제 5 단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1 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및 관할
구별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도시계획
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
고한다.
1973. 1. 26.
서울특별시청

가.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인경 장조서

구분	번호	부대시설명	위	의	폭(㎞)	연장	면적(㎡)	비고
기점	1	서울역정류장	서울역 광장		22.8	220	5,016	
연경	2	서울역정류장	서울역 광장		18.0	210	3,600	
기점	3	충무로정류장	충무로 6가 7A-25-11 동 55 입		22.8	220	5,016	
연경	4	충무로정류장	충무로		18.0	210	3,600	
기점	5	계기동정류장	계기동 51-계기동 34-12		22.8	220	5,016	
연경	6	계기동정류장	계기동		18.0	210	3,600	
기점	7	신당역정류장	신당역 광장		22.8	220	5,016	
연경	8	신당역정류장	신당역 광장		18.0	210	3,600	

발행처: 도시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관할구별 시민봉사실에 보관.

① 건설부 (서울) 고시 제 1 호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건설에 따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
 법 제 13 조의 규정(이하)에 따름
 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
 고 관계도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 26.
 건설부장관
 가.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지적승인조서 1 열침.
 열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지적승인조서

번호	부대시설명	위 치	폭 (m)	면적(m ²)	면적(m ²)	비 고
1	서울점류장	서울역광장	18.0	210	3,600	
4	동대문점류장	신 중	18.0	210	3,600	
8	대기동점류장	주동및계기동	18.0	210	3,600	
9	철암리점류장	철암리광장	18.0	210	3,600	

사 명

① 1973. 1. 24
 동 모 구 지방행정주사 김 상형
 동우주도사업소 근무를 영함.
 경 부 '지방행정서기 윤 중식
 서울특별시 전입을 영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 호봉을 승함.
 동모구 근무를 영함.
 김기주
 시보근무를 영함. (73. 1. 1-
 73. 2. 28)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73. 3.
 1차)
 5 호봉을 승함.
 시정개발담당공설 제 5 개 발달당에 보함.

<p>지방부서 지방행정주사 육군부 보충지부소 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신석관 지방부서보충지부소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박찬환 북외과 과장 (거점의대공임 근무요원) 근무를 명함.</p> <p>㉠ 1973. 1. 23.</p> <p style="text-align: right;">이승용</p> <p>지방행정사무부에 임함. 공로상을 증함. 봉급과 봉급조사 거장의 포함.</p>	<p>㉡ 1973. 1. 24.</p> <p>노랑전수원 지방행정주사 양석구 지사부소 근무를 명함.</p> <p>송계윤구 지방행정주사 차경기 노랑전수원지사부소 근무를 명함.</p> <p>구희철리 지방행정주사모 김인일 제 1 과 총무과 근무를 명함.</p>
<p>시 물 특 별 시 장</p>	